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3564 |
|----------|-------|

발의연월일 : 2025. 10. 13.

발 의 자 : 이용우 · 민병덕 · 김 윤  
이주희 · 박지혜 · 박정현  
임미애 · 백승아 · 박민규  
김남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의 저촉 여부, 기술능력 충족 여부,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 적합 여부를 검토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지원계획의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 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여 주민 공론화와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5조의5 신설).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지정 폐기물”을 “제25조의5에 따른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정 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5조의5에 따른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2의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지원 계획을 적절히 마련하였는지 여부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예정 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이하 “주민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 지역 및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4. 시·도 의회 의원 또는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의회 의원

5. 시·도 소속 공무원 또는 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br>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br>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br>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br>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br>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br>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u>기후<br/>에너지환경부령</u> 으로 정하는 바<br>에 따라 <u>지정폐기물</u> 을 대상으로<br>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br>업계획서를 <u>기후에너지환경부<br/>장관</u> 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br>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br>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br>다. <u>기후에너지환경부령</u> 으로 정<br>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br>때에도 또한 같다. |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br>-----<br>-----<br>-----<br>-----<br>----- <u>대통령령</u><br>----- <u>제25조의5</u><br><u>에 따른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u><br><u>견을 첨부하여 지정폐기물</u> -----<br>-----<br>-----<br>-----<br>-----<br>-----<br>----- <u>대통령령</u><br>-----<br>-----<br>-----.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br>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br>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br>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br>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br>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 ② -----<br>-----<br>-----<br>-----<br>-----<br>-----                                                                                                                                                                                                        |

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3. · 4. (생략)

③ ~ ⑰ (생략)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5조의5에 따른 주민공  
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2의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한 대책 · 지원 계획  
을 적절히 마련하였는지 여부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⑰ (현행과 같음)

제25조의5(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  
치 예정 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  
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  
· 도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이하  
“주민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  
은 시 · 도지사가 되며,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④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  
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  
지역 및 주변 지역에 거주하  
는 주민대표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  
천한 자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소속 임  
직원

4. 시·도 의회 의원 또는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의  
회 의원

5. 시·도 소속 공무원 또는 해  
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폐기물처리업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주민공론화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